

# 불이학교 정관

※ 2018년 8월 정기총회 12차 개정

## 불이 정신

불이(不二, 不異) 정신이란 이 세상을 너와 나, 몸과 마음,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 등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니라는 세계관을 의미하며, 이 정신은 불이학교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 삶과 교육, 삶과 행함,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가 둘이 아니고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불이학교를 통해 구현해내고자 한다. 이 세상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지적으로 실천적으로 통합하는 안목과 힘을 키워 세상과 연결하고 소통하고 공부하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 또한 공부와 교육은 일회적인 과정이 아니므로 불이 구성원 모두는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 평화 선언

불이 교육의 목적은 진정한 평화의 실현이고 불이학교의 교육 정신은 비폭력 평화 학교를 지향한다. 평화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닌 생명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인간의 정신과 문화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향점이다. 자연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상호 존중의 가치를 갖고 서로 공존할 때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 함께 배우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불이교육론은 방법론이며 지향점은 평화의 실현이다. 평화가 우리가 가야할 곳이라면 불이 교육의 정신은 그 곳을 가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불이라는 나침반과 지도를 들고 생명의 상호 존중과 이해의 가치가 실현된 평화의 목적지로 나아가야 한다. 나와 다른 인간, 우리와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공감, 연민, 협력, 민주주의, 공동체와 같이 평화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불이학교를 정의하는 단어들이며 각 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함께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교는 불이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제2조(학교소재지)** 학교는 주소지를 경기도 고양시에 둔다.

**제3조(기본 학사제도)** 학교는 중고 통합 5년제로 운영한다.

**제4조(사업)** 학교는 불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교의 설립과 운영
2. 관련 단체와의 연대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 제2장 구성원

**제5조(구성원)**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발전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구성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은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
- ② 학부모는 학생의 부모 혹은 실질적으로 부양 및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학생과의 법률적 관계와는 무관하며 학생이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 ③ 교사는 학습 과정을 구상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 ④ 발전위원은 졸업생과 그 학부모, 전학한 학생과 그 학부모, 이직한 교사 그리고 학교의 취지에 동의하는 지역인사 중 총회에서 임명된 자를 말한다.

## 제6조(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

학교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학교의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학습체계가 불이의 정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고 총회 및 기타 회의, 학교의 지역사회 활동, 각종 연대활동, 불이 아카데미강좌 등에 적극 참여한다.

- ① 학생 : 학생은 학생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생자치회의 대표단은 총회(추가) 와 운영

위에 참관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가진다.

② 학부모

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자녀를 학교에 보낼 권리
- 총회 의결권
- 학교의 제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학교의 제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나.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총회와 각급 회의 및 교육 모임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 교육비 및 총회에서 의결한 각종 비용을 납부할 의무
- 학교의 정관과 규정 및 결의를 성실히 지킬 의무
- 불이마을협동조합에 가입할 의무

③ 교사

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총회 의결권
- 학교의 제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학교의 제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나.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총회와 각급 회의 및 교육 모임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 학교의 정관과 규정 및 결의를 성실히 지킬 의무
- 불이마을협동조합에 가입할 의무

다. 교사 고유 업무사항에 관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④ 발전위원

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총회의결권(단,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임명된 5명 이내의 발전 위원에 한함)
- 학교의 제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학교의 제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나.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지역 내에서 학교의 교육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

## 제7조(구성원의 탈퇴와 징계)

구성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 구성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구성원에 대해서는 운영위 결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운영위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단, 징계의 내용이 구성원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일 경우 운영위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해당 구성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징계의 내용이 구성원 자격 박탈이 아닌 경우 징계로 인해 징계 대상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징계수준에 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을 따르나 운영위 결의를 통해 교사 징계에 대한 의견을 교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3장 조직

## 제8조(총회)

- ① 기능: 총회는 불이학교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② 구성: 총회는 학부모 전원, 교사 전원, 5명 이내의 발전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의장: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겸임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의장을 호선 한다.
- ④ 개최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과 8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구성원의 1/3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개최한다. 의장은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받거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면 즉시 소집을 공지하고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 ⑤ 소집 공지: 의장은 총회 개최일 최소 7일 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시, 안건, 장소 등을 공지 한다.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정관의 개정
  - 나. 교장의 임명
  - 다.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감사, 발전위원의 임면

- 라. 입학금, 출자금, 발전기금, 교육비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
  - 마. 예산, 결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 바. 학교의 해산, 합병, 각종 의결기구의 변동에 대한 사항
  - 사. 차입금,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
  - 아. 기타 학교 운영상 중요한 사항
- ⑦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구성원의 1/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구성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구성원 중 학부모는 가구당 1명을 의미하며,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단, 의결사항이 6)항 바.목의 경우 재적 구성원의 2/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구성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의장이 서기를 지목하여 작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도록 한다.
- ⑨ 의결권 제한 : 총회의 의사결정사항과 총회 구성원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 ①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상의 각종 중요사항에 대하여 논의, 의결, 집행을 주관하는 기구로서 교사 약간 명, 운영위원장, 소위원장, 학년대표, 학생 약간명, 발전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기 총회 개최 전에 운영위원이 호선되지 못할 경우 선출된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것에 대해 총회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회의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2 출석으로 개최하며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이 아닌 구성원도 참관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장이 업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출한다.
- ⑥ 운영위원회 논의 및 의결사항
- 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나. 규정의 개정 및 제정의 논의
  - 다. 재정의 관리 및 운영
  - 라. 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 평가서 제출
  - 마.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보고서 제출

바. 소위원회 관리 및 지원

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지원

- ⑦ 회의록: 운영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제10조(소위원회)

- ① 역할: 소위원회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 및 집행하는 기구이다.
- ② 구성: 각 소위의 구성은 최소 3인 이상, 학년별 균등 배분 기준으로 구성하며 운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 소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이다.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종류: 다음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설치 및 해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 가. 기획 소위원회
  - 나. 미래 발전 소위원회
  - 다. 시설터전 소위원회
  - 라. 교육 소위원회
  - 마. 홍보 소위원회
  - 바. 재정 소위원회
  - 사. 규정 소위원회
  - 마. 평화 소위원회
- ⑤ 회의소집: 소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학년회의)

- ① 역할: 기능 중심의 소위원회와 더불어 학교 운영의 주요 단위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부모간 소통과 교류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위원회 사업을 지원한다.
- ② 구성: 각 학년 학부모 전원
- ③ 학년 대표: 학년 대표는 정기 총회 전 각 학년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고 학년 회의의 소집, 운영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회의 운영: 학년회의는 각 학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최소한 아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가. 교사와의 간담회
  - 나. 학교 운영 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
  - 다. 소위원 선출
  - 라. 학교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한 학년별 행사
- ⑤ 회의소집: 학년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감사)

- ① 감사는 학교의 운영, 행정, 재정, 회계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총회는 2인 이내의 감사를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각종 의결사항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나 회계 상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매 정기 총회 시 감사보고서 및 필요시 개선 요구서를 제출한다.
- ⑤ 감사는 정기 총회 60일 전부터 정기 감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 ⑥ 정기 감사 기간 중 감사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교사회 회의록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질의응답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요구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⑦ 정기 감사 및 임시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다음 정기 총회에서 개선 결과를 보고하고 총회자료집에 게시한다.
- ⑧ 정기 감사 기간 이외의 시기에는 필요시 감사는 운영위원회, 재정 소위원회, 규정 소위원회, 인사위원회에 의결권 없이 배석할 수 있다.

## 제13조(교장)

- ① 교장은 학사관리와 교무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지며 불이학교를 대표한다.
- ② 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장 재정

**제1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정의 구성)**

- ① 재정은 입학금, 출자금, 발전기금, 교육비, 후원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 ② 출자금은 학교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고 발전기금은 불이학교의 터전마련 및 학교운영에 사용한다.

**제16조(예산 편성)** 학교 수입과 지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제17조(결산)** 회계연도 종료 시 결산서를 준비해서 총회에 제출한다.

**제18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재정운영규정)** 재정관련 세부 사항은 재정운영규정에서 정한다.

부 칙<2011.08>

본 정관은 2011년 8월 임시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 칙<2014.02.22>

본 정관은 2014년 2월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 칙<2014.08.24>

본 정관은 2014년 8월 임시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 칙<2015.02.14>

본 정관은 2015년 2월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 칙<2016.02.20>

본 정관은 2016년 2월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 칙<2017.02.14>

본 정관은 2017년 2월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 칙<2017.08.19>

본 정관은 2017년 8월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 칙<2018.02.19>

본 정관은 2018년 2월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

## 개정 이력

- 1) 2010년 2월 정기 총회 제정
- 2) 2011년 2월 정기총회 1차 개정
- 3) 2012년 2월 정기총회 2차 개정
- 4) 2012년 8월 정기총회 3차 개정
  - 세부 규정으로, 재정운영 규정 / 교직원 인사 규정 / 교직원 급여 규정을 제정함
- 5) 2013년 2월 정기총회 4차 개정
  - 운영위원회 구성이 변경되었으며 학년회의의 역할을 명문화함
- 6) 2014년 2월 정기총회 5차 개정
  - 소위원회 구성 변경
- 7) 2014년 8월 정기총회 6차 개정
  - 불어마을협동조합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8) 2015년 2월 정기총회 7차 개정
  - 예탁금을 출자금으로 용어변경 및 학기 중 탈퇴 시 교육비 완납 조항 개정 및 신설
- 9) 2016년 2월 정기총회 8차 개정
  - 기획소위원회와 홍보소위원회 분리 신설 및 운영위 논의 의결사항 중 특별위원회 구성 및 지원 추가
- 10) 2017년 2월 정기총회 9차 개정
  - 재정소위원회, 규정소위원회 신설
- 11) 2017년 8월 정기총회 10차 개정
  - 감사 규정 개정
- 12) 2018년 2월 정기총회 11차 개정
  1. 2017년 8월 정기총회에서, 감사규정 개정 의결 시,
    - 1.1 감사의 총회 소집권에 대한 검토(12조 3항 중 감사의 임시총회소집권 삭제를 총회에 발의했으나 존속의견과 삭제의견이 동시에 제출되어 다음회기로 삭제논의 이어가기로 함)
    - 1.2 8월 정기총회 명시에 대한 수정을 다음회기에 처리하는 것을 의결한바 이를 반영함
  2. 학생대표단 총회 참석 및 발언권 추가
  3. 재정규정 개정에 따른 정관의 재정 관련 사항 개정
  4. 기존의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통합, 수정에 따른 관련 문구 수정

5. 소위원회 설치 항목에 대한 오류 정정( 소위원회 설치는 총회 의결 사항임)

6. 2018년 2월 총회 발의로

6.1 평화소위원회 설치

6.2 제8조(총회) ⑥ 의결사항: 다 항목에서 회계책임자 삭제

7. 정관 항목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 문장에 나열된 항목을 분리하여 정리, 통상적이  
지 못한 문구나 단어 수정 등을 변경함.

13) 2018년 8월 정기총회 12차 개정

1. 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 대표 추가(9조)